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02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김기웅 · 박성훈 · 정동만
임종득 · 백종현 · 이종배
이인선 · 김기현 · 서명옥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공기질의 유지·관리 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 및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5조의6(공기질의 유지·관리 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 및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